

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5다213069 판결

[계약보증금청구의소]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건	2025다213069 계약보증금 청구의 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권효진, 문일봉, 이용선, 허진용
피고, 상고인	B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늘 담당변호사 김광현, 손서영, 최종갑, 홍상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5. 2. 선고 2024나2022878 판결
판결선고	2025. 9.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부터 5까지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도급계약 제33조 제1항 제6호는 '수급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또는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압류, 가압류,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절차의 개시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도급인이 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이하 '이 사건 해제·해지조항'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수급인의 회생절차의 신청이나 개시 자체를 해제 또는 해지의 요건으로 삼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도급인인 원고의 계약해지 통보 당시 수급인인 D 주식회사의 공사 수주현황, 재정 상황 및 D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진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D 주식회사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D 주식회사와 계약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이 사건 보증약관 등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해제·해지조항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따른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상대방에게 해제·해지권이 있다는 법정해제·해지사유를 구체화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도산해지조항의 효력, 이행불능에 따른 계약해지 및 판단의 기준 시점에 관한 법리오해나 합의해지 성립 및 부제소합의에 관한 판단누락 또는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6, 7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금 반환의무가 피고의 상계통지로 소멸하였다거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상고심에서 처음하는 주장이거나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서경환 마용주 노태악(주심)